

KB 퇴직연금정기예금 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최고금리	연 0.95%	2021.03.24 현재, 세전, 60 개월 기준 해당 금리는 KB 퇴직연금정기예금의 만기 이자율 기준이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적용이자율은 매월 달라질 수 있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기간	1 개월 이상 60 개월 이하	연/월/일 단위, 고정금리형 기준
가입금액	제한 없음	
재예치	O	
분할해지	O	만기(중도)해지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근로자)별로 횟수 를 산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의 산정에서 제외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	X	
예금자보호	O	확정급여형,개인형 퇴직연금에 한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보호하지 않음)
세제혜택	X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불가

●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세전]	[일 단위]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일수 ÷ 365 [월 단위]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 ÷ 12
중도해지이율	최저 연 0.1% (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다만, 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분할해지 이자율 적용

「KB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KB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KB퇴직연금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형의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계약서류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 정기예금			
가입금액	▪ 제한 없음			
계약기간	고정금리형	1 개월에서 60 개월(5 년)이내에서 연,월,일 단위로 계약		
	변동금리형	1 년(회전기간 3 개월, 6 개월 2 종류)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불가			
만기 이자율 (2021.03.24기준)	(세금공제 전, 연%)			
	구 분	계약기간		이자율 (연%)
		월구간	일구간	
	고정 금리형	1 개월 ~ 3 개월 미만	28일 이상 ~ 93일 미만	0.15
		3 개월 ~ 6 개월 미만	93일 이상 ~ 183일 미만	0.45
		6 개월 ~ 9 개월 미만	183일 이상 ~ 274일 미만	0.55
		9 개월 ~ 12 개월 미만	274일 이상 ~ 367일 미만	0.65
		12 개월 ~ 18 개월 미만	367일 이상 ~ 555일 미만	0.75
		18 개월 ~ 24 개월 미만	555일 이상 ~ 735일 미만	0.80
		24 개월 ~ 30 개월 미만	735일 이상 ~ 915일 미만	0.85
		30 개월 ~ 36 개월 미만	915일 이상 ~ 1096일 미만	0.85
		36 개월 ~ 60 개월 미만	1096일 이상 ~ 1830일 이하	0.90
		60 개월		0.95
	변동 금리형	1년(3개월 회전)		0.45
1년(6개월 회전)		0.55		
최종이자율 (2021.03.24기준)	▪ 고정금리형: 최고 0.15%(1 개월 ~ 3 개월 미만) ~ 0.95%(60 개월) ▪ 변동금리형: 최고 0.55 %(6 개월 회전)			

분할해지 이자율 (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적용 이자율) (산출근거) (세금공제전, 2021.03.24 기준)	▪ 분할해지는 만기(중도)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근로자)별로 횟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고정금리형] <table> <tr> <th>사 유</th><th>이율 적용</th></tr> <tr> <td>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td><td> - <u>계약기간 12 개월 이하</u>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약정이자율 </td></tr> <tr> <td>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td><td> - <u>계약기간 24 개월 이하</u>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td><td> - <u>계약기간 36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td><td>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td><td> - <u>계약기간 60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td><td>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⑤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td><td> - <u>계약기간 60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⑥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td><td>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td><td> ○ 경과기간 36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36 개월제 약정이자율 </td></tr> <tr> <td> ☐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td><td> * 경과기간 : 신규 또는 재예치일 이후의 경과일 </td></tr> <tr> <td> ☐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td><td>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 (가산금리 포함) </td></tr> <tr> <td> ☐ 가입자의 사망 </td><td></td></tr> <tr> <td> ☐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td><td></td></tr> </table>	사 유	이율 적용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u>계약기간 12 개월 이하</u>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약정이자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 <u>계약기간 24 개월 이하</u>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u>계약기간 36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u>계약기간 60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⑤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u>계약기간 60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⑥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 경과기간 36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36 개월제 약정이자율	☐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 경과기간 : 신규 또는 재예치일 이후의 경과일	☐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 (가산금리 포함)	☐ 가입자의 사망		☐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사 유	이율 적용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u>계약기간 12 개월 이하</u>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약정이자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 <u>계약기간 24 개월 이하</u>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u>계약기간 36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u>계약기간 60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⑤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u>계약기간 60 개월 이하</u> ○ 경과기간 24 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 개월제 약정이자율																											
☐ ⑥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경과기간 24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24 개월제 약정이자율																											
☐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 경과기간 36 개월 이상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36 개월제 약정이자율																											
☐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 경과기간 : 신규 또는 재예치일 이후의 경과일																											
☐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 (가산금리 포함)																											
☐ 가입자의 사망																												
☐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 교체매매	[최초 만기 前] -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u>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만기 재예치 後] - 1년 미만 :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u>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 1년 이상 :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u>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u>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u> 적용 (단,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 적용)	
분할해지 이자율 (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적용 이자율) (산출근거) (세금공제전, 2021.03.24 기준)	[변동금리형]		
	사 유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최초 만기 前 -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u>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 신규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u>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만기 재예치 後 -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u>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u>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중도해지 이자율 (산출근거) (세금공제전, 2021.03.24 기준)	[변동금리형]																				
	사 유		최초 만기 前		만기 재예치 後																
	□ 계약해지 □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		-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u>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u>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세금공제전, 연%)		-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u>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u>																
			예치기간	이자율																	
15일 미만			0.10																		
	15일 이상~ 1개월 미만	0.3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0.30																			
	3개월 이상	0.50																			
-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u>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u>																					
만기후이자율 (산출근거) (2021.03.24 기준)	(세금공제전, 연%) <table><tr><td colspan="2">경과기간</td><td colspan="2">이자율</td></tr><tr><td colspan="2">만기후1개월이내</td><td colspan="2">만기이자율 X 50%</td></tr><tr><td colspan="2">만기후 1개월초과~3개월이내</td><td colspan="2">만기이자율 X 30%</td></tr><tr><td colspan="2">만기후 3개월초과</td><td colspan="2">0.2</td></tr></table>					경과기간		이자율		만기후1개월이내		만기이자율 X 50%		만기후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이자율 X 30%		만기후 3개월초과		0.2	
경과기간		이자율																			
만기후1개월이내		만기이자율 X 50%																			
만기후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이자율 X 30%																			
만기후 3개월초과		0.2																			
- 만기이자율 :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일반정기예금 고시이자율 적용																					
이자지급시기	고정금리형	신규일 및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변동금리형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자동재예치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아래의 재예치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합니다.																				
	구분	고정금리형 일 단위 계좌	고정금리형 월(년) 단위 계좌	변동금리형 계좌																	
	재예치기간	12개월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 기간	최초 계약기간단위와 동일 기간																	
거래방법	▪ 신규 : 예금주와 은행간 전문(電文)을 통해 거래 ▪ 해지 : 은행창구 방문																				
계약해지방법	▪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 불가 ▪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해당일수만큼 약정이자를 차감하고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대 상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주 1)}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주 2)}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 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 17 조 제 3 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 18 조 제 2 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 19 조 제 1,3 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 20 조 제 1 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 21 조) 주 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연금기획부(연금상품운영 Unit)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스마트상담부(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